

#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 설명회

2018. 06.



##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 설명회

### □ 개 요

- (時/所) '18.6.27(수)~29(금) 13:00~15:00(3일 中 1일만 참석)

일자	장소	참석요청 지역(권장)
6.27(수)	광주광역시 광주역(일반철도) 무등산실	광주, 전라, 충청, 제주, 세종
6.28(목)	서울특별시 영등포역 대회의실	서울, 경기, 강원, 충청, 세종
6.29(금)	부산 CJ대 한통운빌딩 3층*(부산역 도보 5분) *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48번길 7-6 3층	부산, 대구, 경상, 제주

- (대상) 위험물질 운송차량 소유자, 물류기업/화주기업 담당자

\*단말장치 장착대상(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2)에 한함

### □ 주요내용

- (법령) 물류정책기본법령 개정 내용
- (사업설명) 추진경위 및 목적, 시스템 구성 및 주요기능, 연차별 추진계획, 기대효과 등
- (단말장치) '18년 시범사업(300대) 단말장치 장착 및 운영, 연차별 단말장치 장착 방안 등

#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



# I. 「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」의 설치 및 운영개요

## 1. 배경 및 필요성

- 위험물질 관리가 소관부처별로 산재(10개 부처, 13개 법령)되어 있고, 운송정보공유가 미흡하여 사고시 신속·정확한 방재가 어려움
- 개별 운송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차량 이동경로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

## 2. 추진경과

- (‘17. 3)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근거인 물류정책기본법 개정
- (‘17.12) 센터구축 및 운영을 위한 BPR/ASP 수행
- (‘18. 3) 물류정책기본법 시행

## 3. 센터의 설치 및 운영 개요

- 센터의 위치 :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(경상북도 김천시)
- 구축기간 : 2018. 3 ~ 2021. 12 (약 4년)
- \* '22년 이후는 기반사업 완료(시스템구축, 단말장치 장착 등), 운영 및 유지보수 체제로 전환

## 4. 진행사항

### ①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 구축

- 사전운송정보 입력 및 관리, 차량 관제 기능 구축
- 위험물질 운송차량 상황대응관리 및 사고관리 기능 구축
- 단속관리 및 단말장치 관리 기능 구축 등

### ② 단말장치 장착 및 운영 지원

- 단말장치 개발(규격고시) 및 사업자 선정 절차



## II. 세부 이행계획

### 1.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구축

비전	ICT 기반의 능동적인 사고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위험물질 운송 국가 안전망 구현				
추진목표	사회 안전망 강화	실시간 정보제공/관리강화	신속한 사고 대응/지원		
전략방향	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	사고감지를 통한 선제적 조치	사업자 안전관리 편의기능 제공	이상운행 차량 제어기능 확대	정책 및 서비스 개발 기반 구축
추진전략	<p>실시간 모니터링 기반 위험물질 운송안전 통합관리 강화</p> <p>사용자 편의와 관리 효율성을 감안한 통합형 단말장치 구축 및 활용 확산</p> <p>ICT 기술 발전을 감안한 위험물질 운송안전 서비스의 지속적인 강화</p> <p>정보 공동활용과 기관 간 업무 협업을 통한 능동적 사고예방 실현</p> <p>중단 없는 운송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운영 체계 구축</p>				

## 2. 추진목표 및 일정

### ① 추진목표 및 내용

연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
추진 목표	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 기반 조성	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 확대 및 안정화	지능형 모니터링 기반의 대응체계 강화	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 기능 고도화
추진 내용	·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 센터구축 및 운영	· 사전운송계획 시스템 연계 확대 · 이상운행 감지 및 대응	· IoT 기반의 이상운행 감지 · 정보 연계 확대/고도화	· 빅데이터 분석·활용 · 지능형 모니터링 기능 구축

### ② 추진 일정

세부사업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
① BPR/ISP 수립	· 업무 모델 설계 · 시스템 모델 설계 · 마스터플랜 수립				
② 위험물질운송 안전관리센터 구축사업		· 시스템 구축 · 시범사업 실시 (300대)	· 모니터링 기능 고도화 · 정보연계 서비스 고도화	· 신규기능 개발 · 수집정보 공동활용 및 분 석체계 수립	· 시스템 안정화 (15,000대)

### Ⅲ. 관련 법령

#### 1. 관련근거

- ‘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법령인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시행
  - 위험물질의 종류 및 최대 적재량 기준, 단말장치의 장착·운영 관련 사항, 운송계획정보의 입력 등
  - \*법률 제14714호, 2017.3.21. 공포, 2018.3.22. 시행

#### 2. 모니터링 대상(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2)

위험물질 종류		최대 적재량 기준	관계기관
위험물 (휘발유, 경유, 등유 등)		10,000L 이상	소방청 소방산업기술원
지정폐기물 (폐산, 폐유, 폐합성 수지 등 액상)		10,000kg 이상	환경부 한국환경공단
유해화학물질 (황산, 염산, 질산 등)		5,000kg 이상	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
고압가스	가연성가스 (LPG, LNG, 수소 등)	6,000kg 이상	산자부 한국가스안전공사
	독성가스 (불화수소, 염화수소 등)	2,000kg 이상	



### 3. 대상별 법령검토

#### ① 한국교통안전공단

-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을 대행
-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업무
  - 단말장치의 장착·운용 및 운송계획정보의 입력 등에 관한 교육
  -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
  -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고 관련 상황 감시 및 사고발생 시 사고 정보 전파 등
- 위험물질운송단속원은 위험물질 운송차량 및 사업장 조사 권한 부여
- 단말장치 장착/개선/운행중지 명령

#### ② 위험물질 운송사업자

- 단말장치 장착차량의 소유자는 단말장치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점검·관리하여야 하며, 운전자는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동안 단말장치의 작동을 유지
- 차량의 운전자 정보, 운송하는 위험물질의 종류, 출발지 및 목적지 등 사전운송계획을 시스템에 입력
  - \* 「화학물질관리법」,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라 운반계획서 제출/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한 경우에는 운송계획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함
- 단말장치 장착·개선명령서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단말장치의 장착 또는 개선을 완료한 후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함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	2차	3차 이상
법 제2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단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	법 제73조제1항제5호	50만원	100만원	200만원
법 제2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단말장치를 점검·관리하지 않거나 단말장치의 작동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	법 제73조제1항제6호	50만원	100만원	200만원
법 제2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운송계획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	법 제73조제1항제7호	50만원	100만원	200만원
법 제29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·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73조제1항제8호	50만원	100만원	200만원